
어린이집 운영에 알아두면 유익한

보 육 업 무 관 련 정 보

2013. 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일 러 두 기

1. 본 자료는 어린이집원장이 인지하지 못하여 행정기관 지도점검에서 지적받는 사례를 줄이고자하는 목적에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업무 외에 설치 관련 정보 등 복지부 소관이 아닌 내용도 수록하였습니다.
3. 관련법령은 자주 변경되어 법조문 소개는 생략하였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보육사업안내까지를 포함하였습니다.
4.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적용한 법령은 현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최종 처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6. 지도점검 사례의 행정처분은 관련 법령을 표기한 것으로 실제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7. 행정처분 기준 및 지적사례는 감사원, 복지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차 례

<제 1편> 어린이집 운영 실무(법령정보)

1. 어린이집 인가증 등 게시	1
2. 보육교사/보육아동 사진 게시	2
3. 연령별 반편성 및 현원 관리	3
4. 출석부 기록 유지	4
5.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교직원 관리	5
6.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아동 관리	6
7. 어린이집 운영시간	7
8. 취약보육 운영 관리	8
9.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 수납	9
10.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장부 비치	10
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12. 어린이집 보험(공제) 가입	12
13. 보육료 아이사랑카드 결제	13
14. 급·간식비 적정 집행	14
15. 보육아동 명단 관리	15
16. 비상 대피로 확보	16
17. 안전교육 실시	17
18. 보육교직원 관리	18
19. 보육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19
20. 보육교직원 퇴직금 제도 운영	20
21. 원장 전임(상근) 및 겸직	22
22.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시기 준수 및 구비서류 비치	23
23. 보수교육 이수	25

24. 자체 안전점검 실시	26
25. 식단표 작성	27
26. 실내 공기 질 관리	28
27. 석면건축 안전 관리	29
28. 도시가스 관리	30
29. 건축물 전기 안전관리	31
30. 소방시설 설치 유지 등	32
31. 어린이집 환경관리	33
32.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리	35
33. 성범죄 경력 조회 등 관리	37
34. 아동학대 금지 및 예방	38
35. 어린이집 급식 관리	39
36.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41
37. 총계정원장 기록 유지	43
38.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44
39. 현금출납부 및 수입지출 결의서 기록	45
40. 비품대장 정리	46
4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47
42. 어린이집 명의 계좌 개설	48
43.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서류 비치	49
44.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50
45.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 관리	51
46. 소화용 기구 비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52
47. 정기 소독 실시	53
48. 어린이집차량 안전운행 등	54
49. 급식재료 관리상태 및 원산지 표시	55
50. 보육교직원 등 근로자 보호	56
51. 장애인 차별 금지	57

52. 어린이집 재산 관리	58
53. 어린이집 수상기 등록 면제	58
54. 개별소비세 면제	59
55. 교재 특별소비세 면제	59
56. 취득세, 등록세 면제	60
57. 교원 경력 인정	60
58. 어린이집 건축	61
59. 어린이집 증축	61
60. 직장어린이집 설치	62
61. 직장보육시설 지원	62
62. 농업진흥구역내 어린이집 설치	63
63. 국고 보조금 지속 수령	63
64. 도시개발계획상 어린이집 설치	64
65. 아파트형공장 입주 어린이집	64
66. 어린이집 상속세 가액	65
67. 협동조합어린이집 설치 운영	65
68. 신용협동조합 어린이집 설치 운영	66

〈제 2편〉 행정기관 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사례

사례 1. 보육교사 허위등록	68
사례 2. 무자격자 보육업무 종사	68
사례 3. 원장 명의 대여	69
사례 4. 보육교사 허위등록	69
사례 5. 아동 허위등록	70
사례 6. 보육교사 허위등록	70
사례 7. 아동 허위등록	71

사례 8.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71
사례 9.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리 위반	72
사례 10. 시간제 근무 실시	72
사례 11. 재무회계관리 규정 위반	73
사례 12.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73
사례 13. 인가받지 않고 사적공간 활용	74
사례 14. 재무회계 관리 소홀	74
사례 15. 위생 관리 부적정	75
사례 16. 국외 체류아동 보육료 부정 수급	75
사례 17. 어린이집 통원이 어려운 원거리 아동 허위 등록	76
사례 18. 보육시간 허위 기재	77
사례 19. 국외 체류 보육교사 정부지원금 지원	78
사례 20. 보육교사 휴가기간 중 대체교사 지원 미 신청	78

<제 3편> 개정 영유아보육법 주요내용 및 지도점검 주요항목

1. '13년 8월 개정 영유아보육법 주요내용	80
2. 주요 지도점검 항목 및 행정처분 기준	82
3. 위반사항별 처분내역(상세)	84

<제 1편> 어린이집 운영 실무(법령정보)

1. 제목 : 어린이집 인가증 등 게시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인가증에 기재된 대표자와 원장이 일치되어야하고, 소재지, 보육정원, 변경사항 등도 기재하여야 함
- 평가인증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현판도 함께 게시하여야함
 - * 어린이집 내·외부에 00유치원, 00미술학원, 00영어어린이집 등 사설 학원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유의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인가증을 게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음

2. 제목 : 보육교사/보육아동 사진 게시

□ 주요내용

- 임면보고 된 교사는 보육실에 있어야 하고, 보육아동이나 교사가 변경될 때마다 수정 게시하여야 함
- 각 보육실 문 옆에 보육교사와 보육아동 사진이 게시되어야함
- * 보육아동이 입소할 때 사진을 제출받도록 하고, 부모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토록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보육교사 및 보육아동 사진을 게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음

3. 제목 : 연령별 반편성 및 현원 관리

□ 주요내용

- 동년도 출생아 기준(동년도 1.1~12. 31 출생아)으로 반편성 (신청서 서류로 보관) 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상위반에 편성된 1~2월생 아동이 등록된 반에서 실제 보육하여야 함
- '13년의 경우,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13.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 연령반에 편성 가능
-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가능(교사대아동비율은 1:5 준수)
- 취학유예아동은 만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취학유예통지서' 제출)
- 혼합반 운영 시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을 감안하여 반별 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사에서 지도점검 시 B반의 아동을 C반, D반에 각각 통합 보육함으로써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하여, 해당반의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하였음

4. 제목 : 출석부 기록 유지

□ 주요내용

- 출석부를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실제 보육아동 및 시스템에 등록된 반별 보육아동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담당반 보육교사가 출결 현황을 매일 퇴근 전에 잘 기록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허위 또는 미등록 아동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아동의 출결관리가 부적정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5. 제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교직원 관리

□ 주요내용

- 인사기록카드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육교직원이 일치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B교사를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시간제 근무를 실시함에 대하여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고발 조치를 하였음

6. 제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아동 관리

□ 주요내용

- 보육아동을 입소원서와 실제 보육, 반편성, 입·퇴소현황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일치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실제 퇴소일(11.30)이 아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퇴소 등록일(12.3)에 대해 2일치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 하였음

7. 제목 :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요내용

- 주 6일, 월~금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을 준수하여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함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지역 및 어린이집 여건,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따라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 운영가능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및 표준보육과정 운영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 토요일 보육을 기피하거나 “방학” 실시 등 의도적으로 보육을 축소운영하지 않도록 관리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운영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2.26일 졸업식 후 13시에 모든 원아를 일찍 귀가토록 함에 대해 운영시간 미준수로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8. 제목 : 취약보육 운영 관리

□ 주요내용

- 지정받은 시설종별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 상시 18명 이상의 미취학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 편성 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 영아전담어린이집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되었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 시간연장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최소(21:00 이후)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24시간 어린이집 : 24시간 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시간연장 보육시간(19시부터 산정)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9. 제목 :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 수납

□ 주요내용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고, 입소료(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현장학습비, 행사비, 기타 특성화비용 등 불가피한 경우, 시·도 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정하지 않은 비용 항목을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수납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 '13.8.13.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 강화
 - 특정시간대·연령에 대한 특별활동 실시 금지, 실시 전 부모동의 의무화, 未실시 아동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제공('14.2.14.부터 시행)
 - 현재는 지침으로 오전시간대 및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특별활동이 금지 되고 있으나, '14.2.14.부터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 가능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초과수납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사에서 지도점검 시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 초과금액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10. 제목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장부 비치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적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반별 출석부, 운영일지, 회계서류 등에 원장이 날인 기재하여야 함
 - * 전산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결산서, 총계장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출납부를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어린이집의 회계장부(수입·지출 증빙서류 포함)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근무상황부, 비품대장, 총계정원장 등을 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11. 제목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 시 부모 위원은 가급적 참여 희망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의는 정기적(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 '12.2.3.부터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

→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11.)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12.11.28.자 공지사항 참조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12. 제목 : 어린이집 보험(공제) 가입

□ 주요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회원 및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에 가입하고
 - 영유아 등 입소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12년 2월 3일 이전 민간보험 가입은 계약을 유지하며, 기존보험 계약 만료 시 즉시 공제회 가입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 가입해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13. 제목 : 보육료 아이사랑카드 결제

□ 주요내용

- 보육아동 이용일수에 따른 구간결제 걱정 여부, 입·퇴소 아동에 대한 보육료 결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함
 - 보육료는 보호자가 직접 결제하도록 관리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보육서비스이용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벌칙 적용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을 등록하고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후 보육료 일부를 부모에게 지급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부모와 어린이집 각각 고발조치 하였음

14. 제목 : 급·간식비 적정 집행

□ 주요내용

- 영유아에게 고른 영양을 제공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급간식 비용이 지출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지자체에 제출한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급·간식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 보호자에게 안내한 식단표대로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1인당 적정 급식비(1,745원)에 비해 과소 집행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급간식비 적정집행 및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 적정이상의 과대집행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15. 제목 : 보육아동 명단 관리

□ 주요내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육아동 현황을 근거로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아동과 실제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일치하도록 관리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보육료, 기본 보육료 등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환수,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고발 조치를 하였음

16. 제목 : 비상 대피로 확보

□ 주요내용

- 비상대피로 도면이 각 보육실 등 어린이집내에 게시되어야 하며, 비상구가 적치물 등으로 막혀있지 않게 관리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비상대피로에 교재교구 등 장비가 적재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17. 제목 : 안전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대상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함
 -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한 후 서류와 사진 등으로 결과를 관리함
 - * 결과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아동복지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18. 제목 : 보육교직원 관리

□ 주요내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육교직원 명단과 실제 근무중인 보육교직원이 일치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이거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자격 취소
 - 정원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 가능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 현원 100인 이상의 경우 간호사, 영양사가 있어야 함
 - 현원 40인 이상인 경우 취사부가 있어야 하며, 80명을 넘을 때마다 1인을 추가
 - * 상시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 배치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명의 대여 위반일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및 벌칙조항 적용,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보육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자격 정지 처분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등록된 보육교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근무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보육교사자격취소, 원장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였음

19. 제목 : 보육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보육교직원 임면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보육교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20. 제목 : 보육교직원 퇴직금 제도 운영

□ 주요내용

- 모든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단, 2011년 이전은 보육교직원 5인 이상 시설이 해당됨)
- 퇴직적립금은 보육교직원 통상임금의 1/12 이상 적립하고, 보육교직원 개인계좌별 적립 또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가입
 - 대표자 또는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중도 인출하여 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단,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
 -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여입이 가능
 - * 퇴직적립금 적립현황은 매년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자체에 제출함
 - * 퇴직연금상품 가입시 일반보험상품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관할 노동감독기관에 통보하였음
 - 00시 어린이집에서는 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사에 월납 40만원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지자체 지도점검 시 퇴직적립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 00어린이집 원장은 지인의 소개로 퇴직연금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퇴직연금이 아니고 개인연금보험이었음
 - 퇴직연금보험에 가입 후 퇴직금 지급을 하려고 중도인출하려니 해약환급금에서 50%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퇴직금지급에 곤란을 겪음

21. 제목 : 원장 전임(상근) 및 겸직

□ 주요내용

- 정원 20인 이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이 가능
 - 원장이나 보육교사 모두 전임으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특히,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음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재차 위반시 운영정지 처분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원장 전임근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22. 제목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시기 준수 및 구비서류 비치

□ 주요내용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은 관할 지자체에 임면 보고
 - 보육교직원 임용 전 반드시 자격,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보육교사의 원장 업무 대행은 7일(연속, 휴일 포함)이내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 또는 대체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 불가피한 사유 : 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
- 특별활동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도우미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으로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의 취사부는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보육교직원 임면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명의 대여 위반일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및 벌칙조항 적용,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보육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자격 정지 처분
 -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보육교직원 채용 관련 구비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23. 제목 : 보수교육 이수

□ 주요내용

- 보수교육 대상 교사가 실제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 정지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1개월 자격정지 조치를 하였음

24. 제목 : 자체 안전 점검 실시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관리하고, 보육교직원이 안전점검 방법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해 숙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일정기간별(매일)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25. 제목 : 식단표 작성

□ 주요내용

- 영유아를 위한 급식은 영양적 균형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직접 조리해서 제공하여야 함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식단을 활용하되, 특히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에게 통지하는 식단표와 제공되는 급·간식 메뉴가 일치되어야하고, 급·간식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함
 - 1일 중식 1회, 간식 2회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시간연장어린이집 또는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은 저녁과 아침 식단이 있어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식단표 없이 임의로 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26. 제목 : 실내 공기 질 관리

□ 주요내용

- 연면적 430m²이상인 국공립, 법인, 직장 및 민간어린이집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은 실내공기질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신규교육 : 소유자 등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6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6시간
-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이행
 - 유지기준 측정항목 해당 시 연 1회-2년에 1회
 -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 및 개선명령 이행

□ 관련법령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①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 미이수, 실내공기질 미측정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② 개선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7. 제목 : 석면건축 안전 관리

□ 주요내용

- 연면적 430㎡이상인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안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인은 석면안전 관리교육(6시간)을 받아야 함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28. 제목 : 도시가스 관리

□ 주요내용

-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 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준일은 매 1년(가정보육시설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이며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정함
 -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어린이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도시가스사업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안전관리자 선임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29. 제목 : 건축물 전기 안전관리

□ 주요내용

-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거나 증·개축 시
 -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0. 제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등

□ 주요내용

- 어린이집은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실내장식물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함
 -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를 고용하여야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 어린이집에서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은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방염성능이 있는 커튼 등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31. 제목 : 어린이집 환경관리

□ 주요내용

-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관리기준을 지켜야 함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써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실을 말함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 나.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放散量)이 75mg/kg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비고: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양 및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의 측정과 실내활동공간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측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환경보건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2. 제목 :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리

□ 주요내용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운영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서를 발급받아 비치하여야 함
 - 신고서류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보험가입증명서, 학교 등기인가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첨부
- 전세버스 운영사업자와 통학차량(승차정원 9인 이상)임대계약 시에도 신고서 사본 첨부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어린이집시설에서 운행되는 승합과 규격이 규정되어 있음
- 어린이통합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합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확인증을 비치하여야 함
 - * 신규 안전교육의 경우 통학버스 등을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이 내. 재교육은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도로교통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미신고 차량운행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 제160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통보(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 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33. 제목 : 성범죄 경력 조회 등 관리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어린이집 설치·운영 포함)에 종사할 수 없음

- 성범죄 경력 조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취업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조회 주기 :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① 어린이집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특별활동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34. 제목 : 아동학대 금지 및 예방

□ 주요내용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처벌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불가
 - 아동학대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아동학대시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13. 7월 이전에는 3년)
 -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후 2년(아동학대시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13. 8월 신설 조항)

* <제 3편> ‘13. 8월 개정 영유아보육법 주요내용 참고(p.79~80)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아동복지법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아동학대가 확인되는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운영정지 또는 폐쇄
 - 또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 ◆ (지적사례) 00시 어린이집에서 야간 보육교사가 시침핀으로 아동들의 발바닥을 찌르는 등 학대사실이 확인 되어 원장 및 해당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하였음

35. 제목 : 어린이집 급식 관리

□ 주요내용

- 어린이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 영양사 1인을 두어야하며, 상시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 조리사를 두어야하나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예외
 - 영양사를 두어야하나,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함
 - 5개 이내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 반드시 1개 시설에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함
- * 급식위생관리 체크리스트는 필수서류는 아니나, 위생점검 또는 평가인증 등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식품위생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예: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과태료 20만원 이하 부과)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조리사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음

36. 제목 :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 주요내용

-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거주자 및 영유아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같음
 - 보육교직원 신규채용시에는 채용신체검사서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 건강검진으로 같음
 - * 보육교사는 비사무직으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대상임
 -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송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을 기록
-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기관으로 이송
 - 보육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또는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보육교사는 완치시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장은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할 수 있음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를 비치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령,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급여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보육아동의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음

37. 제목 : 총계정원장 기록 유지

□ 주요내용

- 예산과목별 수입·지출내역을 적정하게 기록하여야 함
 - 전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그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총계정원장 등 회계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38. 제목 :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 주요내용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세입처리하지 않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함
 - 예비비를 두는 경우 세출예산의 2%이내여야 하고(업무추진비에는 지출 불가), 세출예산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편성하여야 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세출예산 중 기타운영비 편성 및 실제 적립이 적정 하여야 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의 15%이내)
- 부모로부터 받은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의 집행 후 잔여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보호자에게 반환하되
 -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추가수납 불가)

□ 관련법령 :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예결산서가 미흡하면 어린이집 인증 기본항목에도 미흡에 해당
- ◆ (지적사례) 00사에서 지도점검 시 장부 미비치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39. 제목 : 현금출납부 및 수입지출 결의서 기록

□ 주요내용

- 현금출납부 서식에 따라 수입·세출 결의내역을 가급적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함
- 수입·지출결의서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일치시켜야 함
 - 어린이집 수입의 일부를 개인 명목의 지출이나 혼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개인차량 주유비를 운영비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 보육아동 식단과 관계없는 품목들이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관련법령 :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수입지출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인증기본항목에 미흡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미등록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등 사적으로 사용된 지출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반환(여입) 조치를 하였음. 00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카드 이용에 따른 이득(이용포인트)은 당연히 어린이집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조치 함

40. 제목 : 비품대장 정리

□ 주요내용

-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은 정확히 기재하고, 실제 비품이 어느 보육실에 비치되어 있는지 비품대장으로 관리해야 함
-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폐기 또는 멸실된 물품은 근거(사유)와 폐기 일자를 비품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비품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어린이 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41. 제목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 주요내용

- 국고보조를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함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재정형편에 따라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 됨

□ 관련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단, 매년 시·도지사가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 이상 지급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근로계약과 다르게 인건비를 지급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42. 제목 : 어린이집 명의 계좌 개설

□ 주요내용

- 운영비 계좌는 가급적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 특별활동비 등 기타 보육비용을 별도(개인)계좌로 수납하지 않도록 함
 - *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운영비통장’ 1개로 운영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험 부담금과 세금을 보관 할 수 있는 어린이집 명의의 ‘세입·세출의 통장’도 개설 가능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시정 명령
 - 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 조치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어린이집 계좌 이외에 대표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기타필요경비를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반환(여입) 조치를 하였음

43. 제목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서류 비치

□ 주요내용

- 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에서는 입소우선순위를 준수하여야함
 -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소우선순위를 지켜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함.
 - * 보육우선 제공 어린이집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 *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자녀 ③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자녀 ④ 장애인 등의 자녀 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⑥ 부모가 취업중인 영유아 ⑦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⑧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2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⑨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근로자 자녀 (2순위)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자녀, 입양된 영유아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입소 우선순위 준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44. 제목 :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 주요내용

○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은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어린이집이 4, 5층인 경우,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으로 규정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비상재해대비시설(대피용 미끄럼대 등)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45. 제목 :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 관리

□ 주요내용

- 놀이터 및 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정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어린이집과 100미터 이내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있는 어린이집 등은 제외
-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함
 - 놀이시설물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매일 점검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46. 제목 : 소화용 기구 비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소화기를 필요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근이 용이한지, 소화기 정기 점검 실시 등 관리하여야 함
- 어린이집원장은 유관기관 및 보호자와 비상연락망을 확보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고가 중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은 게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비상연락망을 게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47. 제목 : 정기 소독 실시

□ 주요내용

- 위생관리에 대한 어린이집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조리실 및 보육실의 위생관리가 부적정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48. 제목 : 어린이집 차량 안전운행 등

□ 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건강진단서를 비치
-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차량 정기검사를 적기에 실시.
-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
 -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춰야 하며, 차량안전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유아 등·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어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차량내 소화기, 구급상자, 차량안전 점검표, 등·퇴원일지 등이 비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 명령 조치를 하였음

49. 제목 : 급식재료 관리상태 및 원산지 표시

□ 주요내용

○ 집단급식소로 신고 된 어린이집은 식단표에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를 기재하고 공개

-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도 그에 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령(보육사업안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50. 제목 : 보육교직원 등 근로자 보호

□ 주요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
-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 채용 시 부당계약(서면 또는 구두 계약으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 요구)체결 금지
- 여성 보육교직원이 청구하는 때는 월 1일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함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보육교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함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1. 제목 : 장애인 차별 금지

□ 주요내용

- 어린이집원장(장애아전담어린이집,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은 장애인의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이 당해 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함
 -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기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령에서 규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령

< 참고사항 >

- ◆ (법령위반시) 장애인차별에 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 ◆ (지적사례) 00시에서 지도점검 시 발달이 지체된 아동의 입소를 거부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음

52. 제목 : 어린이집 재산 관리

□ 주요내용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어린이집과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령

53. 제목 : 어린이집 수상기 등록 면제

□ 주요내용

-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하여 비치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등록을 면제하여 줌

□ 관련법령 : 방송법령

54. 제목 : 개별소비세 면제

□ 주요내용

- 어린이집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참고품은 개별 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

□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령

55. 제목 : 교재 특별소비세 면제

□ 주요내용

- 어린이집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고급 사진기는 특별소비세를 면제

□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령

56. 제목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주요내용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어린이집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 관련법령 : 지방세법령

57. 제목 : 교원 경력 인정

□ 주요내용

-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 어린이집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

□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58. 제목 : 어린이집 건축

□ 주요내용

-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어린이집 설치 가능

□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령

59. 제목 : 어린이집 증축

□ 주요내용

- 도시공원 안에서 어린이집은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고 증축 후의 층수가 2층 이내로 제한됨

□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60. 제목 : 직장어린이집 설치

□ 주요내용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주 설치가 어려울 경우, 사업장 공동 설치, 지역의 어린이집 위탁 계약, 보육수당을 지급
 -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령

61. 제목 : 직장보육시설 지원

□ 주요내용

- 직장보육시설은 보육교사·원장 및 취사부 임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원장 임금 지원 기준은 매 분기말 기준으로 영유아수 20인 이상, 취사부는 매 분기말 영유아수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령

62. 제목 : 농업진흥구역내 어린이집 설치

□ 주요내용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50인 이상 어린이집 설치 가능
 -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 (설치자의 범위 및 규모는 제한 없음)
- 민간보육시설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농업진흥구역안 50%/농업진흥구역밖 50%)
-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시 농지조성비 면제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실습지 등으로 농지 소유 가능

□ 관련법령 농지법령

63. 제목 : 국고 보조금 지속 수령

□ 주요내용

- 종전의 농어촌 읍·면지역에서 추가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다면 해당 지역이 농어촌 복합도시로 승격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국고 지원금 수령 가능
 - * (불이익 배제의 원칙)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자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 되어서는 안 됨

□ 관련법령 :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64. 제목 : 도시개발계획상 어린이집 설치

주요내용

- 도시개발계획에는 어린이집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령

65. 제목 : 아파트형 공장 입주 어린이집

주요내용

-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 할 수 있는 시설로 어린이집도 포함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66. 제목 : 어린이집 상속세 가액

□ 주요내용

- 근로자 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어린이집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 상속세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근로복지기본법령

67. 제목 : 협동조합어린이집 설치 운영

□ 주요내용

-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합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령

-

68. 제목 : 신용협동조합 어린이집 설치 운영

□ 주요내용

- 신용협동조합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신용협동조합법령

<제 2편> 행정기관 주요 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사례

사례 1 보육교사 허위등록

<지적사항>

- 00보육교사 임용기간은 5개월이나, 실제로는 2개월만 근무케 하고, 나머지 기간은 급여를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고,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가 수령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운영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 영유아보육법 제48조(보육교사 자격취소)
- 고발, 경력 삭제 등

사례 2 무자격자 보육업무 종사

<지적사항>

- 000을 주방보조 등 도우미로 채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취사업무 외에 아동 보육업무도 담당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자격정지)

사례 3 원장 명의 대여

<지적사항>

- 000이 원장으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친인척관계에 있는 보육교사가 원장역할을 수행하고 원장등록자는 보육교사로 보육을 담당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원장 자격취소)
- 보육교사 경력 삭제, 원장 경력 삭제

사례 4 보육교사 허위등록

<지적사항>

- 000은 보육교사로 임용되었으나, 보육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급여는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고 있음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 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8조(명의대여 보육교사 자격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 영유아보육법 제54조(고발)
- 보육교사 경력 삭제 등

사례 5 아동 허위등록

<지적사항>

- 아동을 4-12개월까지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 폐쇄) : 보조금 1,000만 원 이상 부당수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 영유아보육법 제54조(고발)

사례 6 보육교사 허위등록

<지적사항>

- 대표자 겸 원장은 남편을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했으나, 실제로는 보육을 하지 않고 차량 운행에 종사케 하고, 남편이 담당해야할 반은 다른 반과 통합하여 보육함으로써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 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 영유아보육법 제54조(고발), 보육교사 경력 삭제 등

사례 7 아동 허위등록

<지적사항>

- 000은 시간연장보육교사로 임용되었으나, 한 달에 10일 정도 출근하여 2-3시간만 근무하는 등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를 부정하게 지급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시설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 영유아보육법 제54조(고발)

사례 8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지적사항>

식자재 관리 소홀

- 영유아를 위한 식자재 관리에 있어서 상한 원료, 유통기한 경과(네임펜 등으로 날짜 조작), 이미 제공된 급식 재보관 등 급식관리 기준 위반(시정명령)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사례 9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리 위반

<지적사항>

-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 36개월 미만 보호장구 3개 외에 유아용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음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사례 10 시간제 근무 실시

<지적사항>

- 보육교사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한 후 지급된 급여 및 처우개선비에서 일부를 편취하는 등 보조금 유용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운영정지 및 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사례 11 재무회계관리 규정 위반

<지적사항>

- 00물품을 구매하면서 증빙자료 없이 현금을 지출하였고, 관련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 결의서, 현금출납부 등)도 비치하지 않고 있음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사례 12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지적사항>

- 원장은 보육교사 겸직임에도 00 교사로 하여금 해당아동을 보육하게 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
 - 00 교사는 만 2세 담당으로 만 2세 4명, 만 0세 1명을 통합 보육함으로써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사례 13 인가받지 않고 사적공간 활용

<지적사항>

- 원장은 행정기관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 내 보육실에서 가족 등과 함께 거주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명령)

사례 14 재무회계 관리 소홀

<지적사항>

- 자가 차량 연료비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고,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운영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사례 15 위생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 걸레, 대걸레 자루, 샴푸, 세척제, 수세미 등 청소도구 및 비품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화장실내에 보관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명령)

사례 16 국외 체류 아동 보육료 부정수급

<지적사항>

- 2011. 1. 9.부터 4. 24까지 106일간 국외 체류하는 동안 부모가 맡긴 아이사랑 카드를 사용하여 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000천 원을 부정 수급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운영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사례 17 어린이집 통원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아동 허위 등록

<지적사항>

- 어린이집과 실거주지가 멀어 정상적인 통원이 불가능한 어린이집에 허위로 아동을 등록한 후 보육료를 부정수급
 - 000이 친·인척 또는 지인인 부모로부터 영유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아 허위 등록 후 보육료 부정수급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운영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지적사항>

- 2011. 6. 9.부터 같은 해 7. 30. 까지 00병원에 입원한 영유아 아동에 대하여 시간 연장보육을 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여 시간연장보육료 부당 수령
- 시간연장 보육기록이 없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신청하거나 부모대신 보육교사가 출석부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연장보육료 부당 수령
- 영유아의 시간연장 보육시간을 매월 60시간이 되도록 시간연장 출석부에 미리 입력(19:30~22:30)하여 출력한 후 이를 근거로 시간연장 보육료 신청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운영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사례 19 국외 체류 보육교사 허위등록 후 정부지원금 지원

<지적사항>

- 2009. 9. 11.부터 2010. 12. 30.까지 국외에 체류 중이던 보육도우미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구청에 허위보고 후 무자격자인 000을 대체교사로 채용하여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운영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환수)

사례 20 보육교사 휴가기간 중 대체교사 지원 미 신청

<지적사항>

- 보육교사가 15일 동안 휴가를 사용하여 보육 공백이 생겼음에도 대체교사를 두지 아니하여 보육교사 배치기준 위반(보육사업안내지침은 보육교사가 연가(주중 5일/인) 사용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를 신청하도록 함)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명령)

**<제 3편> '13. 8월 개정 영유아보육법 주요내용
및 지도점검 주요항목**

1

'13. 8월 개정 영유아보육법 주요내용

□ ' 13. 8. 13일 시행 법률안 주요내용

○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 강화(제16조)

종전	개정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u>3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u>5년(아동학대 시 10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 벌금형 선고 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후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u>2년(아동학대 시 10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집 근무 결격사유 강화(제20조)

종전	개정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u>5년(아동학대 시 10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 벌금형 선고 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후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u>2년(아동학대 시 10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교부 제한기간 : 2년(아동학대 10년)

○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폐쇄 근거 신설(제45조)

○ 보육교사·원장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 제한기간 신설(제48조)

종전	개정
- 자격 재교부 제한 명시적 근거 없음(통상 1년 후 재교부)	- 자격 재교부 제한 근거 마련 * 2년(아동학대인 경우 10년)

□ ' 14. 2. 14일 시행 법률안 주요내용

○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 강화(제29조)

- 특정시간대 · 연령(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에 대한 특별활동 실시 금지
- 특별활동 실시 전 부모 동의 받도록 의무화
- 특별활동 미실시 아동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제공

※ 위반시,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가능, 현재는 지침으로 오전 시간대 및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특별활동 금지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제33조의2)

-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 시, 그 차량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합버스로 신고 의무화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제12조)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포함

○ 어린이집 우선입소 기준(제28조)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를 정할 때 소득수준 뿐 아니라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주요 지도점검 항목 및 행정처분 기준

항목	관련조문	지도점검의 내용	행정처분
어린이집 설치기준	설치인가(제13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했는지 여부	시정 또는 변경명령, 벌칙
	설치기준(제15조)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	시정 또는 변경명령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에 대한 점검	인원(제17조)	제17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자격(제21조)	보육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원장자격정지 원장·교사의 자격취소
	보수교육(제23조)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원장자격정지 보육교사의자격정지
	자격증의 대여(제22조의2)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무자격자 채용 또는 타반 통합보육여부	원장·교사의 자격취소, 벌칙
어린이집 운영	운영기준(24조) 운영위원회(25조) 급식관리(33조) 생활기록(29조의2)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취약보육의 우선실시(26조)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과태료처분 복지부 지침('12.3)
어린이집 운영	보육의 우선제공(28조)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였는지 여부 민간·개인어린이집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 중단 등	과태료처분
건강·영양· 안전	건강관리·응급조치(31조)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 4의4.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처분 시정명령

항목	관련조문	지도점검의 내용	행정처분
비용	비용의 부담(3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한 자	보조금의 반환명령 어린이집의 운영 정지 및 폐쇄처분 과징금 처분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정지,벌칙
	양육수당(34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한 자	보조금의 반환명령 어린이집폐쇄처분 원장의 자격정지 벌칙
	서비스이용권 (34조의3)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벌칙
	무상보육의 특례 (제3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한 자	벌칙
	비용의 보조 등 (36조)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 하였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보조금의 반환명령 어린이집폐쇄처분 원장의 자격정지 벌칙
	보육료 등의 수납 (38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벌칙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40조)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 폐쇄	
지도감독	어린이집 폐지·휴 지·재개의 신고 (제43조)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정 또는 변경명 령(제44조)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 폐쇄 등
	어린이집의 폐쇄 (제45조)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벌칙

3

위반 사항별 처분내용(상세)

위반 사항	처분 내용
① 보육료 부정수급 및 부모 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및 고발 등 - 부정수급시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이상 : 시설폐쇄 •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시설 폐쇄 • 3백만원~5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6개월~시설 폐쇄 등 - 부정수급시 원장 자격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 1년 • 3백만원~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1년 • 1백만원~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1년 - 부모에게 지급한 보육료 환수 및 고발
② 차량안전기준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15일~6개월)
③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과다 수납 등	시정명령 및 위반정도 등에 따라 고발
④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운영일 및 운영시간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우선순위 위반 : 시정명령, 운영정지 (1월~6월) 및 과태료 (1백~3백만원) ○ 운영일 및 운영시간 위반 : 시정명령~시설폐쇄
⑤ 식단 미이행 등 급식관리 기준 위반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15일~시설폐쇄)